

의안번호	제419호
의결연월일	2017. 11. 1

-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0. 26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10. 26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11. 1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[주민복지실장 : 류 승 순]

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영유아보육법」 과 불일치,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

### 나. 주요내용

-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내용 수정(안 제4조)
-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수정 및 추가(안 제7조)
-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사유 수정 및 추가(안 제14조)
- 비용의 보조 내용 추가(안 제20조)
- 보조금의 반환 사유 추가(안 제21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- 본 조례안은 제4조 및 제7조 ‘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제’ 제14조 ‘위탁의 취소’, 제20조 ‘비용의 보조’, 제21조 ‘보조금의 반환’ 등의 규정을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